

의안 번호 1309	【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12. 6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2. 12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2. 16.(금)

2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개정('15. 1. 6.)과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(표준안)」 개정('16. 9. 21.)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 별표 1 수정
 - 관외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【별표 1】 개정

현행						개정안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(버스)운 임	숙박비 (1야당)	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숙박비 (1박당)
제1 호	1등 급	1등 급	정액	정액	46,000 (구청장은 실비로 지급)	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실비
제2 호	2등 급	2등 급	정액	정액	40,000	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실비 (상한액: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 역은 50,000)

-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(안 제5조)
 -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
-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 : 공무원 여비업무
처리기준(인사처예규) 반영(안 제6조4의2)
- 정부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정리
 - 때 → 경우, 통산 → 합산, 준용 → 적용, 띄어쓰기 등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(실비보상 등)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8조의2(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,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(표준안)」 별표 1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개정(15. 1. 6.)과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(표준안)」 개정(16. 9. 21.)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는 하는 것으로
- 2016. 11. 3부터 11. 23까지 입법예고 실시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,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관계 법령 >

□ 지방공무원법

제46조(실비보상 등)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, 가산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무원 여비 규정

제8조의2(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(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「국고금관리법」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(이하 "정부구매카드"라 한다) 또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(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, 이하 "신용카드"라 한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주일 이내에,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

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,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,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□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법 여비 조례

[별표 1]

운임 및 숙박비(제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(버스)운임	숙박비 (1야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구청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40,000

비고 :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“공무원여비규정”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
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